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부에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3명(4·5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며, 통일부에 북한 관련 AI·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4명(4·5급 1명, 5급 1명, 임기제6급 1명, 임기제7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28.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통합지원” 조항을 신설하고, 제11조제3항 중 “10. 북한 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” 조항을 신설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70”를 “27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66”을 “273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51”을 “258”로 한다.

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제1항 및 별표1의2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정세분석국)①~②(생 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9. (생략)	제11조(정세분석국) ①~② (현행 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9.(현행과 같음) <u>10. 북한 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<신설></u>
제12조(인도협력국)①~②(생 략)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27. (생략)	제12조(인도협력국) ①~② (현행 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~27.(현행과 같음) <u>28.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통합지원<신설></u>

•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통일부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70</u>	<u>273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66</u>	<u>269</u>	+3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51</u>	<u>254</u>	+3

[별표 1의2]

통일부 공무원 정원표(부칙 제2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70</u>	<u>277</u>	+7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66</u>	<u>273</u>	+7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51</u>	<u>258</u>	+7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